

제306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태성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태 성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송파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성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
‘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.

서울특별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정부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정부가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,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간 상이한 일부 용어와 규정이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

이에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규정 등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고자 “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필수노동자는 재난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
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
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
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
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